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69호 2024년 11월 22일(금)

공 고

-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우선결정(도로)(안) 주민 재공람·공고 ... 2

입법예고

-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8

발행 : 시 민 소 통 과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공고 제2024-1026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우선결정(도로)(안) 주민 재공람·공고

-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우선결정(도로)(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속초시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가. **공고목적** :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우선결정(도로)(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 공람·공고
 나. **공고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13개소 (도문동, 영랑동, 조양동, 청호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6	10~12	국지 도로	307	청호동 444-22도	청호동 444-28도	일반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1	16	10~12	국지 도로	306	청호동 444-22도	청호동 444-28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5	4~6	국지 도로	216	영랑동 229	영랑동 237-10	일반도로		1993.4.28 (속고 제93-11호)	
변경	소로	3	95	4~6	국지 도로	241	영랑동 234-6대	영랑동 237-10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34	6	국지 도로	158	청호동 1332-3대	청호동 1339도	일반도로		1977.4.19 (강고 제77-72호)	
변경	소로	3	134	6	국지 도로	162	청호동 1333-8잡	청호동 793-11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81	6	국지 도로	295	조양동 1182전	조양동 1209-3전	일반도로		2001.5.8 (속고 제2001-18호)	
변경	소로	3	281	6	국지 도로	295	조양동 1182전	조양동 1209-3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38	6	국지 도로	273	도문동 331-2도	도문동 382-6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39	6	국지 도로	619	도문동 302도	도문동 371-9천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40	6	국지 도로	500	도문동 929-7도	도문동 1039-1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41	6	국지 도로	100	도문동 821-97구	도문동 914-1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42	6	국지 도로	84	도문동 844잡	도문동 894-1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43	6	국지 도로	421	도문동 1400-21천	도문동 2169구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44	6	국지 도로	51	도문동1707-20도	도문동 1536-1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45	6	국지 도로	417	도문동 1561-2대	도문동 224-2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46	6	국지 도로	235	도문동 2170구	대포동 920구	일반도로			

다.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라. 공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033-639-2447)

마. 관계도서 : 생략(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내외 물가상승과 맞물려 농기계 부품 및 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지원확대로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형농기계 수리 부품비 공제금액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호)
 - 회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55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43,
속초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906, 팩스 033-631-6161,
전자문서 ley052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033-639-29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30만원”을 각각 “50만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부품대금) ①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타이어 등 소모품 포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p> <p>1. (생략)</p> <p>2. 대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u>3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u>30만원</u> 이상인 경우에는 <u>30만원</u>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부품대금 지원혜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연간 3회로 제한하며, 자가 영농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한한다.</p> <p>② (생략)</p>	<p>제5조(부품대금)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50만</u> <u>원</u> ----- ----- <u>50만</u> <u>원</u> ----- <u>50만원</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요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추가 : 이메일 주소(고지서 발송 및 대관 관련 공지사항 안내)

3. 주요내용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 신청서) : 개인정보 항목(이메일 주소) 추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주 소 : 우)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변영로 155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실(예술공연팀) 최성현 주무관
- 연 락 처 : 전화 033-639-2254 / 팩스 033-631-7331
- 전자메일 : chltjdgus91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메일,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예술공연팀(033-639-22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별지 제1호서식]

결 재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속 초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공 연 명			
목적 및 내용			
신 청 인	주 소		
	단 체 명	연 락 번 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이메일(e-mail)		
사 용 시 설	기 본 시 설	1.대공연장	2.소강당 3.전시실
	부 대 시 설	별지 참조	
사 용 시 간	준 비 시 간	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 시간 공연회수 회
	공 연 시 간	년 월 일 시 분에서 년 월 일 시 분까지	
출석 및 참석예정인원	출 연 진: 의 명 참석예정인원: 명		
관 략 료	유료 ()	전산예매: 일반	현장예매: 일반
	무료 ()	학생 기타	학생 기타
장 치 및 연 습	무 대 장 치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무 대 연 습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을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년 월 일

성명: (서명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p>스텝 회의</p>	<p>※ 대공연장 대관 신청시 원활한 공연(행사) 진행을 위해 속초문화예술회관에 방문하시어 문화예술회관 감독들과 스텝 회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유선진행에 체크 부탁드립니다.</p> <p><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시 <input type="checkbox"/> 유 선 진 행(033-639-2560)</p>
<p>행사 진행</p>	<p><input type="checkbox"/> 진행요원 있음 <input type="checkbox"/> 진행요원 없음</p>
<p>추가사항</p>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신 청 인	단체(공연자)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주 소					
공 연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부 대 설 비 내 역 및 사 용 료 (단위: 원)

구 분	종 류	단 가	수 량	회 수	기 간	금 액	비 고	
무 대 설 비	음향반사판	1일 70천원	식	일	~		■ 조율비 별도부담	
	피아노	대공연장	1일 40천원	대	일	~		
		소강당	1일 20천원	대	일	~		
	덧마루	1일 40천원	식	일	~		■ 사용자 설치 및 철거 ■ 연주용 의자 및 보면대 추가 10세트당 10천원	
	연주용 의자, 보면대 (기본 각 30EA)	1일 30천원	개	일	~			
	댄스플로어 (무용매트)	1일 50천원	식	일	~			
냉 난방기	냉방		식	일	~		■ 기본사용료*50%	
	난방		식	일	~		■ 연료시가*사용량	
음 향	메인스피커(콘솔포함)	1일 100천원	식	일	~			
	모니터 스피커	1일1대 10천원	대	일	~			
	무선마이크	1일1대 20천원	대	일	~			
	유선마이크 / D·I 박스	1일1대 5천원	개	일	~			
영 상	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 20,000Lumens)	1일1대 100천원	대	일	~		■ 고정식	
	자막용 LED 전광판 (기본 131인치 * 2EA)	1일 100천원	대	일	~			

뒷장에 계속

구분	종류	단가	수량	회수	기간	금액	비고
조명	기본조명	1회 40천원		회	~		
	Follow Spot	1일1대 30천원	대	일	~		
	포그 머신	Unique/ Hazer	1일1대 15천원	대	일	~	■ 포그머신 액 포함
		MDG	1일1대 30천원	대	일	~	
	무빙 라이트	SPOT	1일1대 30천원	대	일	~	
		WASH	1일1대 10천원	대	일	~	
	PAR 64 라이트	1일1대 1천원	대	일	~		
	PAR 46 라이트	1일1조 4천원	대	일	~		■ 1조(8EA)
	Ellipsoidal - source 4	1일1대 2천원	대	일			
	Strobe	1일1대 10천원	대	일			
기타							
합계							
총합계							

1. 위와 같이 속초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 부대설비 사용료는 년 월 일 까지 납부하겠습니다.
3. 입금처 : / 예금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조건서

- 사용자는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 공연 또는 행사 중 상행위, 특정종교 포고 등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합니다.
- 기본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부대시설 사용 등 자세한 사항은 조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사용 10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미납시 자동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 특별한 설비의 설치를 승인받은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 및 관련법에 따라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각종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고,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대관공연·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등 부착 및 설치할 경우 사전에 문화예술회관과 협의 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반입한 물품의 분실 또는 파손 등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사용허가 승인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20일 전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시물은 사용신청 시 작품목록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는 발생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수거 처리 등을 통해 허가받은 시설이 깨끗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공연장 내에는 꽃다발 및 음식물 등을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상기사항 이외에도 속초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추가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수사항을 어길 시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사용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허가조건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20 . . .

공연(행사) 단체(개인)명 :

(인)

속초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속초시(문화체육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문화예술회관 사용 신청서 및 시설사용료 납입고지	3년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본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서식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 제3호(작성 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으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음

3. 작성자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정재룡
연락처	(033)639-2208



속 초 시



수신 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문화체육과-9290(2024. 11. 20.)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개선사항 없음)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4A강원속초063) 1부, 끝.

교육가족지원과장

주무관	김예빈	가족지원팀장	김성미	교육가족지원	2024. 11. 20.	신영미
원조자				과장		
시행	교육가족지원과-13625	(2024. 11. 20.)		첨수	문화체육과-9330	(2024. 11. 20.)
우	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 http://www.sokcho.go.kr
전화번호	033-630-2443	팩스번호	033-639-2059		/ tt051010@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강원속초063		
정책명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명	최성현	전화번호 033-639-225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1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별지 제1호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를 일부 개정함. 성별구분 또는 고정 관념,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성별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속초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혜빈/033-639-2443)

문화체육과장 귀하



속 초 시



수신 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알림(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문화체육과-8395(2024. 11. 6.)호 관련입니다.
2.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결과 **비규제**로 행정규제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추후 법제과정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조서 1부. 끝.

기획예산과장명칭

주무관	김예림	고유형의원가 담당	김예민	기획예산과장	전공 2024. 11. 7. 여광범
검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308	(2024. 11. 7.)	접수	문화체육과-8508	(2024. 11. 7.)
우	248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 속초시청)	/ http://www.sokcho.go.kr		
전화번호	033-639-1549	팩스번호	033-639-2106	/ k/imh3308@korea.kr	/ 대국민 공개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조서

조 례 명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소 관 부 서	문화체육과				
개 이 정 유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하고, 고지서 발송 및 대관 관련 공지사항 안내 등 원활한 대관 운영을 위해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관 련 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검 내 토 용	연 번	검 토 대 상	검 토 의 견		
1	○ 안 별 지 제1호 - 신청인 개인정보(이메일) 추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제한 : 해당없음 - 의무부과 : 해당없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행 규 대 여 정 제 상 부	연 번	조 문	비 심사 대 상		심 사 대 상
1	○ 안 별 지 제1호	○	비규제	완화	비중요규제 (신설강화)
향 후 이 행 사 항	비규제로 비심사대상이므로 추후 법제과정 이행				